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규정	제 정 일	2025. 10. 1.
		개 정 일	2026. 10. 1.
		개정차수	2차
		담당부서	학사·석사학위센터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동서울대학교(이하 “본교” 이라 한다.) 학칙 제4조의3에 의거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운영교원

제 2조 (교원) ① 각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세부 운영 책임을 위하여 과정별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사, 진로, 프로젝트, 논문 등에 관련된 상담 및 지도를 한다.

제 3 장 전문기술석사과정운영위원회

제 3조 (전문기술석사과정운영위원회) ① 전문기술석사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석사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 입학홍보처장, 기획처장, 학사·석사학위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전임교원 및 산업체 인사로 구성한다. 이때 산업체인사는 50%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계획에 관한 사항
2. 입학사정에 관한 사항
3. 전문기술석사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5조 (회의 및 여비)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 4 장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제 7조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전문기술석사과정별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학과에 전문기술석사과정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8조 (구성 및 기능) ① 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각 과정별 운영학과의 전임교원 및 외부 산업체 인사로 구성하며, 이때 산업체인사가 50%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과정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과정별 교육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2. 과정별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선행학습경험인정에 관한 사항
4. 졸업계획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과정별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6. 과정별 연차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7. 기타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 5 장 학기 · 수업일수

제 9조 (학기 및 학기개시일) 본교 학칙 제8조(학기 및 학기개시일)에 따라 운영한다.

제10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 · 지변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년도 2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감염병 등에 따른 국가적 재난 등 위기단계 발생 시 수업일수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장 입 학

제11조 (입학자격) ①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모집단위 관련분야 재직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② 재직경력 확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르며, 별표에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12조 (입학지원) 입학지원 및 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 제13조 (입학전형)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입학전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술석사과정 시행계획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전형계획에 의한다.
- 제14조 (입학허가) 입학허가는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 제15조 (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 7 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 제16조 (휴학, 복학, 자퇴, 제적) 휴학, 복학, 자퇴, 제적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학사내규에 따른다.

제 8 장 교육과정 및 수업

- 제17조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인재양성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문기술석사과정별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18조 (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해당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 (교과이수단위)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이수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 제20조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①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생의 관련 산업체 경력 또는 학습경험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선행학습경험의 학점인정은 입학 후 정해진 기간에 학생의 신청을 받아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학점인정 사정 및 학점인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③ 선행학습경험 인정 학점은 3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P(pass) 또는 F(fail)로 부여한다.
 ④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의 자격은 다음과 같고, 세부인정기준은 따로 정한다.

구 분	인정자격	인정학점	비 고
단기직무과정 이수	90시간 이상 이수자	1학점	중복인정의 경우 최대 3학점으로 사정함
관련 직무 경력	관련 직무 5년이상	2학점	
	관련 직무 10년 이상	3학점	

- 제21조 (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주말수업, 교외수업, 원격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사제도의 유연성을 위하여 집중이수제를 통해 제1항의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매학기의 개설교과목은 그 학기수업 개시 전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④ 수업시간은 1교시를 50분으로 한다. 단, 야간수업은 1교시를 45분으로 한다. 다만, 원격수업, 현장학습수업, 교외수업, 집중이수제의 수업시간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22조 (강의계획서) ①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를 매 학기 시작 전에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② 강의계획서는 학기시작 전 학생에게 공지한다.
- 제23조 (출석부) ①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부에 출결상황을 15주 이상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출석부는 전자출석부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할 경우 그 교과목의 성적을 부여받을 수 없다.
- 제24조 (휴·보강) ① 담당교수가 부득이 휴·결강할 경우에는 보강계획을 기록한 결·보강계를 사전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휴강하고 해당 과정별로 이를 공지한다.
- ② 결·보강계는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제출 및 무단 결강의 경우는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한다.
- ③ 보강계획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보강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르지 않은 보강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 9 장 성적평가

- 제25조 (평가시험) ① 성적평가는 주·객관식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26조 (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 ②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등급별 비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1. 1.)
- ③ 기타 수강 및 성적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학사내규와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27조 (성적의 정정 및 취소) ①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는 이를 정정 및 취소할 수 있다.
- ② 성적 정정 및 취소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8조 (학사경고) 재학 중 1학기 당 취득 성적의 평점평균이 1.50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한다.

제 10 장 학위수여

- 제29조 (졸업계획서) ① 학생은 제 3학기 기간 내에 졸업계획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졸업계획서는 과정별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제30조 (졸업과제 지도교수) ① 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학생의 졸업계획서에 따른 졸업과제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 ② 졸업과제 지도교수는 3학기 종료 전까지 교무처장이 위촉한다.

③ 졸업과제 지도교수 1인당 지도받는 학생의 수는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졸업과제 지도교수는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가 불가능한 경우 졸업과제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졸업과제의 심사) ① 학위취득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졸업과제를 수행하고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1. 개발연구보고서(기술보고서) 또는 학위 청구 논문

2. SCI급 또는 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논문

3. 특허 등록

4. 자격증 취득(기술사 및 기능장)

② 졸업과제의 심사를 신청하는 학생은 ‘연구윤리’ 관련 교육이수증명 및 이행확인서를 졸업과제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졸업과제 심사위원회) ① 학생의 졸업과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 졸업과제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은 졸업과제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으로 구성하고, 산업체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졸업과제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④ 산업체인사는 산업체경력이 7년 이상의 경력자로 한다. 단 신산업분야의 경우 산업체 경력 5년 이상으로 한다.

⑤ 과정의 운영 주임교수는 졸업과제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⑥ 위원장은 졸업과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임교수는 각 심사결과보고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학생의 이수학점 및 졸업과제심사결과 등 졸업요건 충족결과를 전문기술석사과정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기술석사학위수여에 대한 심의를 한다.

제33조 (학위수여)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학칙 제31조 제7항에 의거하여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한다.

1. 전공필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총 이수학점이 24학점 이상이고 평점평균이 3.0이상인자

2. 졸업과제 심사를 통과한 자

② 제1항 제1호를 충족하고 제1항 제2호를 충족하지 않은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11 장 등록금

제34조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금) ① 4학기를 등록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필하고 미달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신청학점 수에 따라 징수하는 수업료는 다음과 같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2. 4학점 이상은 해당학기 수업료의 전액

제 12 장 자체평가

제35조 (자체평가) 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교육품질관리를 위해 위원회는 매년 1회 각 과정별 전문 기술석사과정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 (평가방법) 전문기술석사과정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차기년도 학위과정 운영에 반영한다.

제37조 (자체평가 결과 보고)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학과장은 학위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을 반영한 전문기술석사과정 자체평가 보고서를 매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장 보 칙

제38조 (타 규정의 적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학사내규 등의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호

학 위 기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와 같이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학 과 : ○○○○○학과

◦과 정 명 : ○○○○○과정

◦학 위 명 : ○○○○○석사

년 월 일

동 서 울 대 학 교 총 장 ○ ○ ○

학위등록번호 :

제○○○○호

수 료 증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학 과 : ○○○○○학과

°과 정 명 : ○○○○○과정

년 월 일

동 서 울 대 학 교 총 장 ○ ○ ○

【별표 1】 지원 가능 학문 분야

전형	지원 가능 학문 분야
온디바이스 AI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공지능학, 빅데이터학, 컴퓨터공학, 컴퓨터과학, 소프트웨어전공,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 인터넷소프트웨어전공, 모바일소프트웨어전공
AI융합콘텐츠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공지능미디어공학, 실감미디어콘텐츠학, AI·미디어·콘텐츠융합학, 방송영상학, 영화학, 디지털영상공학, 영상예술·영상디자인학, 컴퓨터공학·정보통신학, 인공지능융합교육학, 미디어아트·멀티미디어학, 오디오테크놀로지(음향기술), 음악테크놀로지·사운드디자인학, 방송음향·음향공학, 정보미디어학, 미디어학, 메타버스·XR융합콘텐츠학, 실감게임콘텐츠학, 실용음악학, 음악학

【별표 2】 지원 가능 직무 영역

전형	지원 가능 직무 영역
온디바이스 AI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공지능개발, 빅데이터분석, SW개발, SE, SI, 유지보수, QA/테스터, 백엔드/서버개발, 프론트엔드, 기술지원, 데이터엔지니어, 데이터분석
AI융합콘텐츠 전문기술석사과정	AI 기반 영상콘텐츠 기획·디렉팅, 실감형(AR·VR·XR) 미디어 콘텐츠 개발, 가상·버추얼 디지털휴먼 제작 및 운영,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디자이너, 콘텐츠 마케팅 및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 미디어 데이터 분석·AI 알고리즘 개발, 영상·음향 편집 전문가(프로듀서·엔지니어), 디지털 사운드 시스템 설계·프로그래밍, 음악·음향 R&D, 오디오 소프트웨어 개발, 방송음향·음향네트워크 엔지니어, 실감 게임콘텐츠·캐릭터 디자인, 1인 크리에이터·유튜브·MCN 운영/기획, AI 기반 음악 추천·편집·저작권 관리, VR/AR 입체음향 전문가, 오디오테크놀로지 전문가